

영남대학교 기술이전사업화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0.11.16. 교무위원회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영남대학교 기술이전사업화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영남대학교 기술이전사업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3조(소재) 센터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·관리
2. 기술마케팅 활동 등 기술이전의 촉진
3. 기술이전 및 활용에 의한 수익금 배분
4.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 관리
5.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
6.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.)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영남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지원팀) ① 센터에는 센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팀을 두고,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- ② 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정규직원과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정규직 사무직원의 권리 및 의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관련 제규정을 따르고, 계약직 사무직원의 권리 및 의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을 따른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산학협력단장 등의 당연직과 센터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 부재 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9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
2. 센터의 관련 규정 제정 및 폐기
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지원금, 지자체지원금, 대학지원금, 산학협력단 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다만, 외부 지원기관의 수익금은 지원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(사업비 집행) 센터의 각 사업별 지원금 집행은 산학협력단 및 사업관리기관의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제13조(보고)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0.11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